

일본국 헌법

전문(前文)

일본 국민은 정당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의 화합에 의한 성과와 일본 전토(全土)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동으로 인한 전쟁 참화(慘禍)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이 헌법을 확정한다. 원래 국정(國政)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信託)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수(享受)한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는 이에 위반하는 모든 헌법·법령(法令) 및 소속(詔勅)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 평화를 영원하고 인간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신의(信義)와 공정(公正)을 신뢰하고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保持)할 것을 결의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이 땅에서 전제(專制)와 예종(隸從), 압박과 편협(偏狹)을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얻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국민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 가운데에서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일에만 전념해서 타국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또한 보편적인 정치 도덕 규칙을 지키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기 위한 책무가 됨을 확신한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해서 이와 같은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

제 1 조 천황의 지위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소유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總意)에 기초한다.

제 2 조 황위(皇位)의 계승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제 3 조 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한 책임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 4 조 천황의 기능

- (1) 천황은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사하며 국정에 관여하는 권한이 없다.
- (2)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 5 조 섭정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사한다. 이 경우는 전조(前條)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 천황의 임명권

- (1)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 총리대신을 임명한다.
- (2)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한국-대법원)의 장(長)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 7 조 국사행위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해서 국민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국사행위를 수행한다.

- 1 헌법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公布)한다.
- 2 국회를 소집한다.
- 3 중의원을 해산한다.
-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시(公示)한다.
-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의 관리 임면 및 전권 위임장, 대사 및 공사
의 신임장을 인증한다.
- 6 대사(大赦)·특사(特赦)·감형(減刑)·형 집행의 면제 및 부권(復權)을 인증한다.
- 7 영전(榮典)을 수여한다.
-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의 외교문서를 인증한다.
- 9 외국대사 및 공사를 접수한다.
- 10 의식(儀式)을 행한다.

제 8 조 황실의 재산 수수(授受)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도 또는 하사할 때에는 국회 의결에

기초해야 한다.

제2장 전쟁포기

제 9 조 전쟁포기(拋棄), 군비 및 교전권 부인

-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基調)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希求)하며,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영구히 포기한다.
- (2) 전항(前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戰力)은 보지(保持)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交戰權)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 10 조 국민의 요건

일본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 11 조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에게 주어진다.

제 12 조 자유·권리의 보지 책임과 남용 금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보지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할 수 없으며 항상 공공복지를 위해 사용할 책임을 진다.

제 13 조 개인의 존중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생명·자유·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지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입법 그 외의 국정에 있어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 14 조 법 앞에 평등

-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인종·신조·성별·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門閥)에 의해 정치·경제·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

- (2) 화족(華族 - 작위를 가진 사람과 그 가족) 그 외의 귀족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 (3) 영예(榮譽)·훈장 그 외의 영전수여(榮典授與)는 어떠한 특권도 수반(隋伴)하지 않는다. 영전수여는 현재 이를 가지고 있거나 장래에 받는 자의 한 세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지닌다.

제 15 조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罷免) 권리, 보통 선거와 비밀 선거의 보장

- (1) 공무원을 선정하고 파면하는 것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 (2) 모든 공무원은 공동체를 위한 봉사자이며 일부를 위한 봉사자가 아니다.
- (3) 공무원 선거는 성인에 의한 보통 선거로 이루어진다.
- (4) 모든 선거에 대한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인은 그 선거에 대해서 공적·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6 조 청원권(請願權)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과 폐지 및 개정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청원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않는다.

제 17 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배상책임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8 조 노예적 구속 및 고역(苦役)으로부터의 자유

누구든지 어떠한 노예적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로 인해서 처벌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위반하는 고역을 강요받지 않는다.

제 19 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

제 20 조 종교의 자유

-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 (2) 누구든지 종교 행위·축전·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 (3)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교육 그 외의 어떤 종교 활동도 할 수 없다.

제 21 조 집회·결사·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 (1) 집회·결사 및 언론·출판 그 외의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2) 검열은 인정되지 않으며, 통신의 비밀은 침해받지 않는다.

제 22 조 거주·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외국 이주 및 국적 이탈의 자유

(1) 누구든지 공공복지에 위반하지 않는 한, 거주·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 누구든지 해외 이주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제 23 조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 24 조 가족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

(1)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하여 성립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기본으로 하고 상호 협력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2) 배우자의 선택·재산권·상속·주거 선정·이혼 또는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해 제정되어야 한다.

제 25 조 생존권, 국가의 사회적 사명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모든 생활 면에서 사회복지·사회보장 및 공공위생의 향상과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 26 조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맞는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 27 조 근로의 권리·의무, 노동조건, 아동학사의 금지

(1)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2) 임금·노동시간·휴식 그 외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3) 아동을 학사해서는 안된다.

제 28 조 근로자의 단결권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 29 조 재산권

- (1) 재산권은 침해받지 않는다.
- (2)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3)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장 아래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제 30 조 납세의 의무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 31 조 법정 절차의 보장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과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또는 그 외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32 조 재판받을 권리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제 33 조 부당하게 체포당할 수 없는 권리

누구든지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있는 사법관현이 발부하고 또는 범죄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영장이 없는 경우는 체포되지 않는다.

제 34 조 억류(抑留)·구속의 금지

누구든지 이유를 고지받지 않거나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면 억류·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구금되지 않으며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는 즉시 본인과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제 35 조 주거 불가침

- (1) 누구든지 주거,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해서 침입·수색 및 압수당하지 않는 권리는, 제 33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발부되며, 수색 장소 및 압수품을 명시하는 영장없이 침해되지 않는다.
- (2) 수색 또는 압수를 행할 경우는 권한이 있는 사법관현이 발부하는 특별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제 36 조 고문과 잔혹형의 금지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혹한 형벌은 절대로 금지한다.

제 37 조 형사 피고인의 권리

- (1) 피고인은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평등한 재판소에서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해서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며, 자신을 위하여 공비(公費)로 강제적 절차에 의해서 증인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 (3)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있는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 자신이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한다.

제 38 조 자백의 증거능력(証拋能力)

- (1)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공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 (2) 강제·고문·협박으로 인한 자백 및 부당하게 장기구류 또는 구금된 후의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 (3)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는 유죄 처리가 되거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39 조 소급(溯及)처벌·이중처벌의 금지

누구든지 실행시에 적법했던 행위나 이미 무죄판결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중으로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0 조 형사보상(刑事補償)

누구든지 구류 또는 구금된 후,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국회

제 41 조 국회의 지위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며 국가 유일의 입법 기관이다.

제 42 조 양원제

국회는 중의원(衆議員) 및 참의원(參議院)의 양의원(兩議院)으로 구성한다.

제 43 조 양의원의 조직

- (1) 양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 (2) 양의원의 의원 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 44 조 평등 선거

양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단, 인권·신조(信條)·성별·사회적 신분·문벌(門閥)·교육·재산 또는 수입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

제 45 조 중의원 의원의 임기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 년으로 한다. 단, 중의원이 해산될 경우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제 46 조 참의원 의원의 임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 년으로 하고, 3 년 마다 의원의 반수(半數)를 개선(改選)한다.

제 47 조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구, 투표 방법 그 외의 양원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48 조 양원의원의 겸직 금지

누구라도 동시에 양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제 49 조 세비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로부터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제 50 조 의원의 불체포 특권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해야 한다.

제 51 조 의원의 발언·표결의 무책임

양원의 의원은 원내(院內)에서 행한 연설·토론 또는 표결에 대해 원외(院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2 조 정기회(定期會)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 회 소집한다.

제 53 조 임시회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참의원 또는 중의원의 총의원 4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내각은 소집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

제 54 조 중의원의 해산과 총선거 · 참의원의 긴급집회

- (1)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일로 부터 40 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하고, 선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중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참의원 긴급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 (3) 전항(前項)에 기술된 긴급집회에서 채택된 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며, 다음 국회 개회 후 10 일 이내에 중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 55 조 자격쟁송(争訟)의 재판

양의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상실시키는데에는 출석 의원 3 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

제 56 조 정족(定足)수 · 표결

- (1) 양의원은 각각 총의원 3 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議事)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 (2) 양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정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7 조 의회 공개와 회의록

- (1) 양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가결된 때에는 비밀회의를 열 수 있다.
- (2) 양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며 비밀회의 기록 가운데에서 특히, 비밀 보장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표하고 또한 일반에게 반포(頒布)해야 한다.
- (3) 출석의원 5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 의원의 표결을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 58 조 직원(役員) 선임 · 의원 규칙 · 징벌

- (1) 양의원은 각각 그 의장과 그 외의 직원을 선임한다.
- (2) 양의원은 각각 그 회의 그 외의 절차 및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며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출석의원 3 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

제 59 조 법률의 성립과 중의원의 우월함

- (1) 법률안은 이 헌법이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의원에서 가결한 때에 법률이 된다.
- (2)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재가결된 때에 법률로 성립된다.
- (3)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의원이 양의원의 협의회를 열도록 요구할 수 있다.
- (4)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후, 국회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60 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60 조 예산 의결과 중의원의 우월함

- (1)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예산에 대해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에서 가결한 예산을 받아들인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30 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 61 조 조약의 승인과 중의원의 우월함

조약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해서는 전(前)조약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2 조 국세 조사권

양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증언 및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63 조 각료의 의원 출석

내각 총리대신 그 외의 국무대신은 양의원 중 일원(一院)의 의석을 획득하는 것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서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이나 설명을 위해 출석이 요구되는 때에는 출석해야 한다.

제 64 조 탄핵(彈劾)재판소

- (1) 국회는 파면의 소추(訴追)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해서 양의원의 의원으로 조직된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 (2)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5 장 내각

제 65 조 행정권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제 66 조 내각의 조직과 책임

- (1)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장(首長)인 내각 총리대신 및 그 밖의 국무대신으로 조직한다.
- (2) 내각 총리대신 그 밖의 국무대신은 문민(文民)이어야 한다.
- (3) 내각은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국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제 67 조 내각 총리대신의 사명과 중의원의 우월함

- (1) 내각 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써 지명한다. 이 지명은 모든 안건에 앞서서 행해진다.
- (2)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할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의원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중의원이 지명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 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

제 68 조 국무대신의 임면·파면

- (1) 내각 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 (2) 내각 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제 69 조 내각의 총사직(1)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 결의안을 부결한 경우, 10 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해야 한다.

제 70 조 내각의 총사직(2)

내각 총리대신이 결원된 경우 또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가 소집되었을 경우 내각은 총사직해야 한다.

제 71 조 총사직 후의 내각

전(前) 2 조의 경우, 내각은 새롭게 내각 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 72 조 내각 총리대신의 직무

내각 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해서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며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제 73 조 내각의 직무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사무 외에 다음과 같은 사무를 수행한다.

- 1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總理)한다.
- 2 외교관계를 처리한다.
- 3 조약을 체결한다. 단, 사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官吏)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 5 예산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다.
- 6 이 헌법과 법률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령(政令)을 제정한다.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정할 수 없다.
- 7 대사·특사·감형·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復權)을 결정한다.

제 74 조 법률·정령의 서명

법률 및 정령에는 모두 주임인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 총리대신이 연서(連署)해야 한다.

제 75 조 국무대신의 특전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 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단, 이로 인해 소추의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

제 6 장 사법

제 76 조 사법권 및 행사

- (1)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 (2)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終審)으로서 재판을 행사할 수 없다.
- (3)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며,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구속된다.

제 77 조 최고재판소의 규칙 제정권

- (1)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 (2) 경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 (3) 최고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권한을 하급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78 조 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재판으로 인해 심신이 피로해져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인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 재판관의 징계 처분은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없다.

제 79 조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 (1) 최고재판소는 그 장(長)이 되는 재판관과 법률이 정하는 인원수 그 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그 장이 되는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에서 임명한다.
- (2) 최고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열리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에 국민의 심사(審査)에 부치고, 그 후 10 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 때에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후에도 이와같이 한다.
- (3) 전항(前項)의 경우에서 투표자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허락하는 경우 재판관은 파면된다.
- (4)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5)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이 되면 퇴임한다.
- (6)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에는 감액할 수 없다.

제 80 조 하급재판소의 재판관

- (1)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따라 내각에서 임명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10 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연령이 되면 퇴임한다.
- (2)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정기적으로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에는 감액할 수 없다.

제 81 조 법령 심사권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중심재판소이다.

제 82 조 재판의 공개

- (1) 재판의 대심(對審) 및 판결은 공개법정에서 행한다.
- (2) 재판소가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대심은 비공개로 행사할 수 있다. 단, 정치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헌법 제 3 장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되는 사건의 대심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제 7 장 재정

제 83 조 재정 처리의 기본 원칙

국가 재정을 처리하는 권한은 국회 의결에 기초해서 행사해야 한다.

제 84 조 과세

새로이 과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할 때에는 법률 및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 85 조 국비의 지출과 책무 부담

국비를 지출하거나 또는 국가가 책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기초해야 한다.

제 86 조 예산

내각은 매 회계 연도의 예산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은 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7 조 예비비(豫備費)

- (1)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기초로 해서 예비비를 설정하고,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2) 내각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 88 조 황실의 재산과 비용

모든 황실의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計上)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9 조 공공재산 이용 제한

공공 그 외의 공공재산은 종교상의 조직·단체의 사용·편익·유지를 위해서, 또는 공공의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교육·박애 사업에 대해서 지출되거나 이용될 수 없다.

제 90 조 회계 감사원

- (1)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회계 감사원이 검사하며, 내각은 차년도에 검사 보고와 함께 국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 (2) 회계 감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 91 조 재정상황의 보고

내각은 국회와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 회 국가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

제 8 장 지방자치

제 92 조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

지방 공공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本旨)에 기초해서 법률로 정한다.

제 93 조 의회의 설치 및 장(長)·의원의 선거

- (1) 지방 공공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議事)기관으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 (2) 지방 공공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의 관리는 지방 공공단체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제 94 조 지방 공공단체의 기능

지방 공공단체는 재산관리와 사무처리 및 행정집행 기능을 가지며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조례(條例)를 제정할 수 있다.

제 95 조 특별법에 대한 주민 투표

하나의 지방 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 공공단체의 주민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을 때, 국회에서 이를 제정할 수 있다.

제 9 장 개정

제 96 조 개정 절차

- (1) 헌법 개정은 각의원의 총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에게 제안해서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 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에 행해지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2)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전항(前項)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되는 것으로써 즉시 이를 공포한다.

제 10 장 최고법규

제 97 조 기본적 인권의 본질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수 년에 걸친 자유획득을 위한 노력의 성과이며, 과거의 무수한 시련에 의한 인내로 현재와 미래의 국민에 대해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信託)된 것이다.

제 98 조 최고법 규성(規性)·조약 및 국제법규의 준수

- (1)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며 이 조규(條規)에 위반하는 법률·명령·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외의 행위 전체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2)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과 확립된 국제법규는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 99 조 헌법의 존중·옹호의 의무

천황 또는 섭정·국무대신·국회의원·재판관 그 외의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며 옹호(擁護)할 의무를 진다.

제 11 장 보칙

제 100 조 헌법 시행기일, 준비절차

- (1) 이 헌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해서, 6 개월이 경과된 날(1947년 5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정, 참의원 의원의 선거 및 국회소집 절차 또는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절차는 전항의 기일보다 앞서 행사할 수 있다.

제 101 조 경과 규정 - 참의원 미성립(未成立) 기간 중의 국회

이 헌법이 시행될 때에 참의원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성립될 때까지 중의원이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 102 조 동전(同前) - 제 1 기 참의원 의원의 임기

이 헌법에 의한 제 1 기의 참의원 의원 중에 그 반수(半數)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이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제 103 조 동전(同前) - 공무원의 지위

이 헌법이 시행될 때에 현재 재직중인 국무대신·중의원 의원 및 재판관, 그 외의 공무원으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으로 인정되어지는 자는, 법률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을 위해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단, 이 헌법에 의해서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되는 때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